

이사회 회의록

제 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

2021년 11월 29일

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

## 제 4 차 (임시)이사회 회의록

1. 의결일시 : 2021. 11. 29.(월) 14:00~16:00
2. 회의장소 : (재)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층 교육장
3. 출석상황 :

재 적 임 원			출 석 임 원		
계	이 사	감 사	계	이 사	감 사
12	10	2	8	7	1

※ 불참임원 : 4명

\* 참석임원

- 이사장 이필영(충청남도 행정부지사)
- 이 사 박영의(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)
- 이 사 권경주(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대표이사)
- 이 사 유유희(유유희법률사무소 변호사)
- 이 사 강기정(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)
- 이 사 전벽수(前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)
- 이 사 김장옥(행복드림요양원 원장)
- 감 사 이근규(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정책팀장)

4. 의 장 : 이사장 이필영(충청남도행정부지사)

5. 기록자 : 사무처 팀원 이아영

2021년도 제4차 (임시)이사회 개최 선언에 이어 제안자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며, 별첨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하다.

별첨 : 이사회 의결서 1부

2021년 11월 29일

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

# 2021년 제4차 (임시)이사회 안건심의 결과

## ① 심의결과

안건번호	안 건	결 과
1	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(안)	원안 의결
2	인사규정 일부개정(안)	원안 의결
3	임금규정 일부개정(안)	원안 의결
4	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 제정(안)	원안 의결

## ②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(안)

### 1. 제안 사유

-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력 운영 형태 변경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
-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지침 종사자 명칭과 통일
- 2020년 제7차 정기이사회( '20.12.24.) 의결사항에 따른 연동규정 개정

### 2. 의결 결과: 원안 의결

### 3. 신·구조문대비표

[별표 3]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일반정규직 정원표

<현 행>

실·센터별 \ 직위별	계	원장	사무처장	센터장	팀장	팀원	비고
계	39	1	1	2	12	23	
사 무 처	11	1	1	-	3	6	
청소년상담복지센터	18	-	-	1	6	11	
청소년활동진흥센터	10	-	-	1	3	6	

<개 정 안>

직위별 처·센터별	계	원장	사무처장	센터장	팀장	팀원	비고
계	39	1	1	2	12	23	
사 무 처	11	1	1	-	3	6	행정원 11
청소년상담복지센터	18	-	-	1	6	11	상담사 18
청소년활동진흥센터	10	-	-	1	3	6	지도사 10

[별표 4]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공무직 정원표

<현 행>

직종별 실·센터별	계	사무처장 센터장	팀장	팀원	비고
계	30	2	2	26	청소년동반자 3 야간생활지도사 3
사 무 처	1	-	-	1	1388전화상담사 2 PTSD 전담 1
청소년상담복지센터	16	-	-	16	117학교폭력 전담 2 미디어중독 전담 2
청소년활동진흥센터	3	-	-	3	진로직업체험시설 전담 3 리더 전담 1
천안성문화센터	5	1	1	3	안전 전담 1 성교육전문강사 10
홍성성문화센터	5	1	1	3	교류전담 1 아이키움 대체인력 1

<개 정 안>

직종별 처·센터별	계	사무처장 센터장	팀장	팀원	비고
계	20	-	-	20	청소년동반자 2 고위기관리전담 1
사 무 처	1	-	-	1	생활지도원 3 1388전화상담사 2
청소년상담복지센터	16	-	-	16	PTSD 전담 1 117학교폭력 전담 2
청소년활동진흥센터	3	-	-	3	미디어중독 전담 2 진로직업체험시설 전담 3
					리더 전담 1 안전 전담 1
					교류 전담 1 아이키움 대체인력 1

<신 설>

[별표 4의2] 수탁기관 일반정규직 및 공무원 정원표

센터별 \ 직종별	계	일반정규직 (센터장)	공무직	비고	
계	10	2	8	성교육전문강사	10
천안성문화센터	5	1	4		
홍성성문화센터	5	1	4		

③ 인사규정 일부개정(안)

1. 제안 사유

- 「지방공공기관 인사·조직 기준·지침」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반영 권고 이행
- 2020년 센터장 채용관련 특정감사(조사) 지적사항 반영
- 2020년 고용노동부(천안지청) 노무관리지도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반영
- 「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」 송부 및 이행 협조 요청

2. 의결 결과: 원안 의결

3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채용방법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(삭제 2017.9.5)</p> <p>④ 원장은 통합채용이 필요한 경우 인력 채용 계획을 사전에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채용방법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원장은 통합채용이 필요한 경우 도의 통합 채용 일정에 따라 채용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을 제외한 채용은 채용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시 도와 협의하여 사전 통보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,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(비정규직 근로자)의 채용 등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<p>⑤ 원장은 「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」에 따라 채용하고, 원장을 제외한 직원의 채용은 10일(선발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20일) 이상의 채용공고를 한 후 응모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채용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⑥ (생 략)</p> <p>⑦ 제4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또한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·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도와 협의, 내부 채용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[별표 5]와 같이 공고기간을 간소화할 수 있다.</p> <p>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제5항에 ----- ----- ----- -----</p>								
<p>&lt;신 설&gt;</p>	<p>[별표 5] 비정규직 채용공고 기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근무기간</th> <th>공고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개월 미만</td> <td>3일 이상</td> </tr> <tr> <td>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</td> <td>5일 이상</td> </tr> <tr> <td>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</td> <td>7일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근무기간	공고기간	3개월 미만	3일 이상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5일 이상	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	7일 이상
근무기간	공고기간								
3개월 미만	3일 이상								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5일 이상								
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	7일 이상								
<p>제8조(시험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원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내지 5인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단, 면접심사의 경우 외부인사가 3분의 2이상 이어야 하며,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외부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.</p>	<p>제8조(시험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,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-----.</p>								

현행	개정안
<p>1. ~ 3. (생략)</p> <p>⑤ ~ ⑨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 (경험·상황·발표·토론면접 등)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⑪ 원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, 합격인원, 응시인원, 필기 합격선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</p>
<p>제25조(징계사유)</p> <p>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5조(징계사유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</u></p> <p>8. <u>회계질서 문란 또는 소극행정을 하였을 때</u></p>
<p>제46조(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위촉직 위원 : <u>청소년관련 전문가 중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</u></p>	<p>제46조(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위촉직 위원 : <u>제1항에 따른 외부인사로</u> -----</p>
<p>제65조(퇴직의 구분)</p> <p>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, 정년퇴직, 당연퇴직 및 <u>징계퇴직</u>으로 구분한다.</p>	<p>제65조(퇴직의 구분)</p> <p>----- --- 징계퇴직, 명예퇴직 등으로 -----.</p>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[별표 3] 징계양정기준					[별표 3] 징계양정기준				
징계사유	해고	정직	감봉	견책	징계사유	해고	정직	감봉	견책
1. (생략)					1. (현행과 같음)				
2. 품위손상 또는 이권행위					2. 품위손상 또는 이권행위				
가) 법인 공신력.명예.위신을 손상하는 행위	○	○	○	○	가) 법인 공신력.명예.위신을 손상하는 행위	○	○	○	○
나) 이권개입	○	○	○	○	나) 이권개입	○	○	○	○
다) 압력, 부당청탁, 사건청탁	○	○	○	○	다) 압력, 부당청탁, 사건청탁	○	○	○	○
라) 직무에 관한 증여.향응(청탁 금지법 위반)	○	○	○	○	라) 직무에 관한 증여.향응(청탁 금지법 위반)	○	○	○	○
마) <u>폭력행위-직원간, 기타</u>	○	○	○	○	마) <u>직원 간 폭력행위 등</u>	○	○	○	○
바) <u>(삭제 2017.9.5.)</u>					바) <u>직장 내 괴롭힘</u>	○	○	○	○
사) 성관련 범죄의 가해자 (신설 2018.12.21.)	○	○			사) 성관련 범죄의 가해자 (신설 2018.12.21.)	○	○		
3. ~ 4. (생략)					3. ~ 4. (현행과 같음)				
5.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					5.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				
가) 문서의 위조.변조.손괴 및 동행사		○	○	○	가) 문서의 위조.변조.손괴 및 동행사		○	○	○
나) 허위보고		○	○	○	나) 허위보고		○	○	○
다) <u>(삭제 2017.9.5.)</u>					다) 소극행정	○	○	○	○
라) 시험부정		○	○	○	라) 시험부정		○	○	○
마) 평정부정		○	○	○	마) 평정부정		○	○	○
바) 행정질서 문란		○	○	○	바) 행정질서 문란		○	○	○
사) 문서.장부의 무단열람 및 대출			○	○	사) 문서.장부의 무단열람 및 대출			○	○
아) <u>(삭제 2017.9.5.)</u>					아) <u>(삭제 2017.9.5.)</u>				
- 이하 생략 -					- 이하 생략 -				
<신설>					부칙 (개정 2021.11.29.)				
					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				



#### 4. 임금규정 일부개정(안)

##### 1. 제안 사유

- 2021년 직원 인건비 인상안 반영
- 「지방공공기관 인사·조직 기준·지침」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반영 권고 이행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내부규정 반영

##### 2. 의결 결과: 원안 의결

##### 3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성과급의 지급) ① ~ ⑤ (생 략) <신 설>	제12조(성과급의 지급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음주운전, 성폭력, 금품·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등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
제23조(직책급업무수행경비) ① <u>처장·센터장(부설센터장 제외한다.)에</u>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00,000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강등·정직·직위해제 또는 휴직(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)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 (생 략)	제23조(직책급업무수행경비) ① <u>사무처장, 상담복지센터장, 활동진흥센터장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(복리후생비)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 1. (생 략) 2. 정액급식비 : <u>월 13만원</u> 3. ~ 5. (생 략)  <신 설>	제24조(복리후생비) ①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: <u>월 14만원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 제24조의2(명예퇴직수당 등) ① <u>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	<p>② 예산의 감소, 임금피크제 등의 이유로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.</p>
<신 설>	<p>부칙 (개정 2021.11.29.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정액급식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

## 5]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 제정(안)

### 1. 제안 사유

- 상생·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 강화
- 기관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, 노사 간 경영책임의 분담으로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 실현. 이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, 책임성, 공익성 및 민주성 확보
- 현장·실무 경험과 경영의 효율적 결산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및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

### 2. 의결 결과: 원안 접수

※ [붙임]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(안)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

**제2조 (선거관리위원회)** ①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(이하 “청소년진흥원”이라 한다)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

1. 입후보자 등록, 자격심사,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
2. 선거인명부 작성
3. 전자투표 운영방법 또는 투·개표소 설치 및 관리
4.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와 승인
5.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및 안내문 부착
6. 노동자이사 후보 득표 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
7.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8.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(임원추천위원회 호선)과 노사대표 각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3조 (권한)** 위원회는 본 규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,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 권한을 가진다.

**제4조 (협조)** 위원회에서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청소년진흥원은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,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청소년진흥원에서 부담한다.

**제5조 (소집 및 공고)** 노동자이사 후보자 선출 사유 발생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·공고하여야 하고, 등록마감 후 10일 이내에 선거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

**제6조 (선거기간)**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익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.

**제7조 (선거일)**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이전에 실시한다.  
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,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15일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입후보자 등록

**제8조 (입후보자 등록)** ① 노동자이사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선거권자의 10% 이상의 추천을 받아 [별지 제1호 서식] 입후보등록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.  
② 후보자가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때 위원회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[별지 제5호서식]의 등록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 
③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하며, 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9조 (입후보자의 공고)** ① 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정관 및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입후보등록을 확정한다. 단,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 
②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를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.  
③ 입후보자에 대한 기호(투표용지 등에 인쇄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) 부여는 접수 마감 후 추첨에 의한다.  
④ 입후보자가 사퇴[별지 제11호 서식]를 하였을 때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선거운동

**제10조 (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)** ①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, 성명, 기호, 소속, 경력,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량, 종류와 크기는 위원회에서 정하되 벽보의 경우는 가로 29.7cm × 세로 42cm 이내로 한다.

② 입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위원회의 통제(검인)를 받은 후 배포한다.

③ 입후보자는 사내 전산망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한 정견 발표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위원회의 통제(검인)를 받아야 한다.

**제11조 (선거운동 기간)**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익일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하며,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은 유급으로 보장한다.

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단, 후보 추천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
**제12조 (금지사항)**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
2.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
3.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
4.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
5.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
6.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로 게재 및 유포하는 행위
7.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
8. 이 규정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
9.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.

**제13조 (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)** 위원회는 제12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의결로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명령, 입후보 등록 무효 또는 선출 무효, 청소년진흥원 인사위원회의 징계 회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.

## 제6장 선거인명부

제14조 (선거권)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는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. 단, 파견 공무원은 제외한다.

제15조 (피선거권) ① 청소년진흥원에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는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. 단, 최초 노동자이사 선거에 한해서는 이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
2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 제2호

제16조 (선거인명부)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.

제17조 (열람)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실시하되, 열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.

제18조 (명부 수정) 선거인 명부 수정 중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을 지적한 노동자가 있을 시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및 추가하고 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.

## 제7장 투표와 개표

제19조 (노동자이사 후보의 선출) ① 노동자이사 후보는 평등·직접·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

② 노동자이사 후보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2인을 선출하되,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,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.

제20조 (투표방법) ① 선거는 기표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.

② 투표는 직접 투표에 의한 근로자 1인 1표로 한다.

③ 투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마감한다.

**제21조 (투표용지 및 투표함)**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.

②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한다.

③ 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된 선거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, 선거권자가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.

④ 투표를 종료하는 때에는 위원은 투표함에 서명 날인하고 봉인하여야 한다.

**제22조 (부재자 투표)** 위원회는 부재자 투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, 장소, 방법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.

**제23조 (참관인)**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인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할 수 있다.

**제24조 (투표·개표사무)** ① 투표·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하며, 투표록을 작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·개표사무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.

**제25조 (개표)** ① 투표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한다.

② 위원장은 투표관리관의 입회하에 투표함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개표하고,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[별지 제6호서식]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26조 (이의 신청의 처리)** ①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즉시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②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의결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7조 (부정선거의 처리) 위원은 선거 기간 중 제12조 각 호의 위반 또는 기타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즉시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.

1. 선거 무효
2. 선출 무효
3. 경고 처분

## 제8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

제28조 (재선거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.

1. 입후보자가 없거나 임명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한 때
2. 투표종료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재적 선거인수의 50%에 미달할 때
3. 노동자이사 후보로 선출된 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또는 임명권자의 임명 전에 사퇴·퇴직·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(후보자 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)하여 추천 또는 임명할 대상이 없게 된 때
4. 위원회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 또는 선출무효를 결정한 때
5. 제19조 제2항에 의한 선출자가 없을 때

② 위원회는 제1항 제4호의 선거무효에 대해서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선거무효를 결정하고, 선출무효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선출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‘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’ 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.

제29조 (보궐선거) 노동자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


## 제9장 보 칙

- 제30조(전자투표 및 개표)** ① 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(이하 이 조에서 “전자투표 및 개표“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.
- 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며, 투표 및 개표의 절차·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 등을 준용한다.

**제31조 (규정의외의 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.

**제32조 (징계회부)** 위원회는 위원이 고의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소속직원이 고의로 공정 선거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청소년진흥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】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<b>후보자 등록 신청서</b>			사진 3×4cm
성 명			
주 소			
생년월일		사원번호	
소속부서		직 급	
근무이력	근 무 기 간	근 무 부 서	
위와 같이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. 20 년 ○ 월 ○ 일 입후보자 : (인) (재)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			
구비서류	1. 후보자등록 신청서(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) 1부 2. 자기소개서 1부[별지 제2호서식]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[별지 제3호서식] 4. 입후보자 추천서[별지 제4호서식] 5. 재직증명서 1부		

※ 허위경력,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【별지 제2호】

## 자기소개서

※ 작성요령

- 자기소개 및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발전방향, 경영방향에 등에 대한 의견 등
- 글꼴 : 함초롬바탕, 글자크기 : 12포인트, 분량 자유

20 년 ○ 월 ○ 일

작성자 : (서명)

#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본인은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노동자이사 후보자(후보 신청자 포함)로서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 포함) 수집·이용·제공 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, 이를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도 인사검증에 필요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#### [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]

항 목	목 적
사진, 성명, 생년월일	후보자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
주소, 연락처	공지사항, 선거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등
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	후보자 자격 확인
자기소개서	임원추천위원회의 참고자료로 활용
그 밖의 사항(경력, 자격증 등)	경력 및 자격취득 사항에 관한 확인

#### [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]

노동자이사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임원 임용일까지 보유 후 파기

#### [동의 거부권리 안내]

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에 아래의 사항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자이사 후보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.

#### [본인 동의]

개인정보 보유기관 제공	민감정보 처리 동의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날인)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

【별지 제4호】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 
입 후보 자 추천서

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 : 소속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

상기인을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.

20    년        ○    월        ○    일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

연 번	소속부서	사원번호	성 명	서 명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11				
12				
13				
14				
15				
16				
17				
18				
19				
20				

No. \_\_\_\_\_

## 후보자 등록 접수증(원 부)

주 소 :

성 명 :

사 원 번 호 :

등 록 일 시 : 20 년 ○ 월 ○ 일 시 분

위와 같이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.

20 년 ○ 월 ○ 일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(인)

(간 인)

.....  
절 취 선

.....  
절 취 선

No. \_\_\_\_\_

## 후보자 등록 접수증(교부용)

주 소 :

성 명 :

사 원 번 호 :

등 록 일 시 : 20 년 ○ 월 ○ 일 시 분

위와 같이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.

20 년 ○ 월 ○ 일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(인)

【별지 제6호】

## 선 거 결 과 공 고

20 년 ○월 ○일 실시한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 년 ○ 월 ○ 일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(인)

기 호	성 명	득 표 수	비 고
1			
2			
3			
4			
5			

【별지 제7호】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 
후 보 자 등 록 현 황

연번	소 속	사 번	성 명	등록일시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
20 년    ○ 월    ○ 일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(인)



## 투표 용지 서식

No. \_\_\_\_\_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

기 호	소 속	성 명	기 표
1			
2			
3			
4			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(인)

위원장

【별지 제9호】

# 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서식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공고 제0000 - 호

## **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공개모집 공고**

「충청남도 노동자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 대표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에 함께할 노동자 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직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 년 ○월 ○일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
### 1. 모집직위 및 선발인원

모집직위	모집인원	임기	직무내용
노동자이사 (비상근)	0명	0년	○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중요 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 ○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에 관한 제언 등

### 2. 응모자격

-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재직 중인 노동자
-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재직 노동자로서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자

### 3. 보수

- 노동자이사 선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수당과 여비 등 지급

### 4. 후보자 등록

- 등록기간 : 20 년 ○월 ○일 ~ 20 년 ○월 ○일

(주말, 공휴일은 등록접수하지 않음)

○ 등록방법 : 방문등록(※모든 등록은 마감일 17:00 이전 등록에 한함)

○ 등록처 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앞

○ 제출서류

① 노동자이사 입후보 등록 신청서(관련 구비서류 첨부)

② 자기소개서
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④ 노동자이사 선거입후보자 추천서

※ 선거권자의 10%(00명) 이상 추천, 중복 추천 가능

⑤ 재직증명서

## 5. 선거운동

○ 선거운동 : 20 년 ○월 ○일 ~ 20 년 ○월 ○일 24시까지

○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(검인)을 받아야 함

- 선거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, 성명, 기호, 소속, 경력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

- 벽보의 경우 가로 29.7cm x 세로 42cm 이내

- 동영상 파일, 전자우편 활용한 정견 발표 3회 이내

## 6. 선거일

○ 선거일 : 20 년 ○월 ○일 00:00 ~ 00:00

○ 선거방법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

○ 선거인 : 총000명

○ 후보선출 : 유효투표의 다수 얻은 자 순으로 2인 선출

※ 득표수 동일한 경우 장기근속자, 연장자 순으로 결정

## 7. 추후일정

### ○ 임원추천위원회 심사

- 투표결과에 따른 대표성 확보 방안, 노동자이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- 노동자이사 정수의 2배수 이사회에 추천

### ○ 이사회 심의·의결 : 이사회 의결(1명)

### ○ 이사장 임명

### ○ 최종 임용 결정 및 발표 :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

## 8. 기타

-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, 최종 결정 후 7일 이내에 폐기합니다.
- 모든 절차는 「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」에 따라 진행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(041-554-2000/내선번호 1번)하시기 바랍니다.

【별지 제10호】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 
선거인명부

20 년    ○ 월    ○ 일

연번	소속	사번	성명	투표용지 수령인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(인)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선거  
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

1. 부 서 :
2. 후보자성명 :
3. 사 원 번 호 :
4. 사 퇴 사 유 :

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는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 이사 후보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.

20 년 ○ 월 ○ 일

후보자 (인)

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